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5. 8. 31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5. 8. 31
- 다. 의안번호 : 제2005 - 44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는 일시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표인상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의거 2개년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함에 따라 급증한 세금 인상이 예상되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개정안이 제출된 것임.
- 그러나, 우리 군의 2005년도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2,605백만원으로 전

년보다 615백만원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, 이는 2005.1.5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.

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5백만원 정도 추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동 조례 개정시 부과주민 1인당 2,440원 정도로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됨.

○ 전년대비 재산세제 개편 상황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율은 33.0% 감소된 반면, 과표적용 비율 상향(46%→50%)에 의한 8.0%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및 2개년 적용으로 34.6% 각각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9.6%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이같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전국합산과세에서 자치단체별로 합산과세에 따른 고액납세자의 세액감소와 주택분 과표 산출방식 개편(주택개별공시)으로 세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임.

〈고액납세자 재산세 감소현황〉

- 한국전력공사 54,675천원 → 9,164천원(45,529천원 감소)
- 농협중앙회 34,606천원 → 7,323천원(27,283천원 감소)
- 국민은행 14,888천원 → 2,795천원(12,093천원 감소)
- 케이티 12,819천원 → 2,327천원(10,942천원 감소)

※재산세의 전년대비 감소분은 연말 종합부동산세(국세)로 과세한 후 2006년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별로 배분될 예정임.

○ 거창군의 경우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개정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개정안 권고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나, 전국합산과세가 시·군별 합산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자 위주로 세액이 크게 감소된 것이며,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 주민들

의 감면혜택 부여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측면, 감소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2006년 토지분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○ 그러나, 2005도 공시지가 상승률(25.6%)에 대하여 50% 감면률 적용 시 전년대비 재산세가 오히려 3.2% 감소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과다 적용되는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감면률 적용에 대하여 수정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.

※ 감면률 적용시 재산세 변동상황<현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25.6%>

- 50% 적용 시 : 공시지가 12.8% 감소<전년대비 3.2%감소>
- 40% 적용 시 : “ 10.2% 감소<전년대비 0.6%감소>
- 30% 적용 시 : “ 7.7% 감소<전년대비 1.9%증가>
- 20% 적용 시 : “ 5.1% 감소<전년대비 4.5%증가>
- 10% 적용 시 : “ 2.6% 감소<전년대비 7.0%증가>
- 미 감면시 : <전년대비 9.6%증가>

○ 과세감면을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감면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것이며,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처리토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므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참고자료

□ 개정근거

○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

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.<개정 1978.12.6, 1998.12.31>

○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사항

-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-3069(2005.8.18), 경상남도 세정과 -7100(2005.8.19)

□ 재산세 부과관련 자료

○ 전년대비 재산세제 개편내용

구분	세율	적용률	공시지가	누진세율 적용
2004	3/1000	46/100	9%상승	전국합산
2005	2/1000	50/100	25.6%상승	자치단체별합산

※ 2005년 공시지가 전국평균인상률 37.5%

○ 재산세 부과현황

(단위:천원)

구분	2004년도	2005년도	증감(%)	비고	
합계	3,219,288	2,604,571	-614,717(△19.1)		
재산세	소계	1,556,392	1,534,450	-21,942(△1.4)	
	주택	1,556,392	790,606		
	건물		743,844		
종토세(토지분)	1,662,896	1,070,121	-592,775(△36.6)	개정시 △65백만원	